

〈전북대학교 여성연구소 2019년 1차 젠더포럼 : 2019년 5월 22일〉

가족개념의 역사와 대안적 개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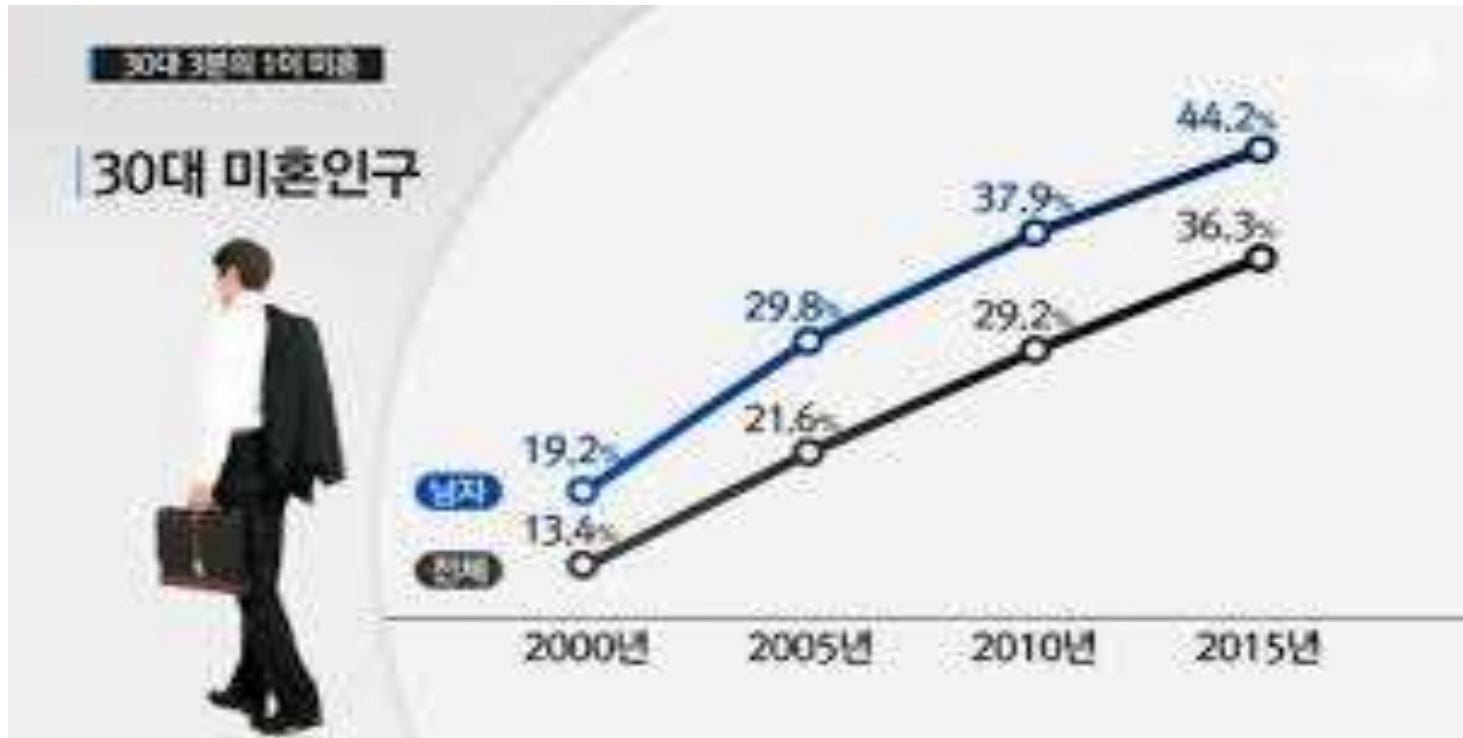
새로운 가족구성의 회로찾기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I. 2017년, 급변하는 가족들

1. 결혼하지 않는(못하는) 사람들

- 30대 남성의 44%, 여성의 36.3%가 비혼



I. 2017년, 급변하는 가족들

2. 1인가구: 나 혼자 산다, 잘!(MBC, 2013~현재)



I. 2017년, 급변하는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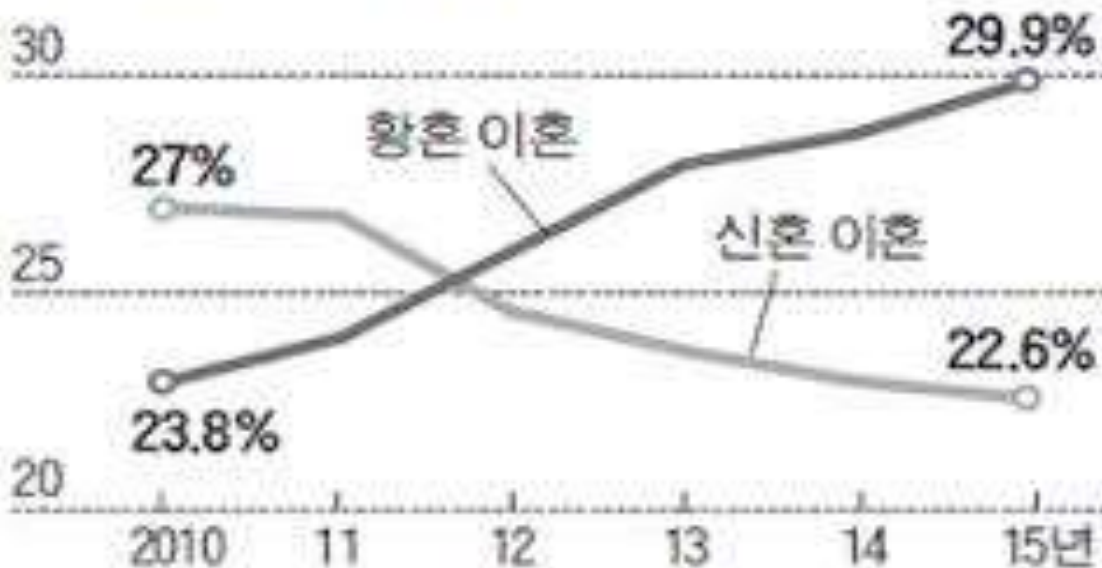
3. 연령별 1인가구: 중년층의 증가

	2005	2010	2015
20세 미만	1.4%	1.2%	1.1%
20대	21.4%	18.6%	17.0%
30대	19.9%	19.0%	18.3%
40대	15.0%	15.0%	16.3%
50대	11.5%	14.1%	16.9%
60대	13.6%	12.8%	12.8%
70대 이상	17.3%	19.3%	17.5%

I. 2017년, 급변하는 가족들

4. 가족보다는 개인: 중년 이후 (황혼)이혼의 증가

증가하는 황혼 이혼



※ 황혼 이혼: 20년 이상을 함께 산 뒤 이혼하는 것

※ 신혼 이혼: 4년 이내에 이혼하는 것 자료: 새법연감

Ⅱ. 한국 가족의 역사

1. 일제 강점기

- 근대적 자아의 실현으로서의 자유연애와 핵가족의 이상



Ⅱ. 한국 가족의 역사

2. 산업화 시기 가족론의 동요와 역진

- 1960년대: “봉건잔재” 비판과 가족근대화론

“부부가 一자집을 짓고 살다가, 자식이 크면 ㄴ자집으로 기둥을 덧대고, 그 자식이 결혼하면 ㄷ자집으로, 다시 그 자녀가 결혼하면 ㄹ자집으로 불러나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라는 ㄹ자집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비극의 요소들. 사회질서와 모랄에 가장 위협요소... 지난 2년간 신문에 보도된 범죄 중 대가족제도가 그 원인이 된 경우가 8%에 달한다.” (모랄전쟁[4] “대가족제도: 혐오, 갈등, 상극-비극의 온상”, 조선일보, 1965.1.8)

- 1970년대: “핵가족화 → 서구화 → 노인소외 → 가족해체”

Ⅱ. 한국 가족의 역사

3. 80년대 경제호황기 베이비붐세대(『82년생 김지영』 부모들)

1) 집단주의와 물질주의 가치

- 첫째, 기억의 공동체 = 박정희주의
- 둘째, 지역주의: 투표행위의 생애적 일관성,
동창회.향우회 등 지역연고적 연대
- 셋째, 가족주의: 소자녀 출산전략과 교육투자, 도구적 가족주의
- 넷째, 세대주의: 청년세대와의 구별짓기

(김혜경·마경희 2015,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39집 2호,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단주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II. 한국 가족의 역사

3. 80년대 경제호황기 베이비붐세대(『82년생 김지영』 부모들)

2) 물질주의 가치의 구현: 부동산 경기를 탄 “내집 마련의 꿈”

“...도봉구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많았다. 어머니는 이곳의 한 단독주택을 2700만원에 샀다. 인천 주공아파트를 판 돈 550만원에 저축을 보태 700만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대출받았다고 한다. 당시 이렇게 큰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은행에 다니는 아버지 덕이었다. 마당이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우리 가족은 2층에 살았다. 1층은 몇 개 방을 나누어 세를 주었다. 이 집에서 7년을 살았다...”

“2700만원에 산 집이 어느새 1억에서 조금 모자란 9800만원이 되어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 집값은 크게 올랐다. 서울의 집값은 1989년 16.6%, 1990년엔 24.2%가 올랐다. 1986년부터 1988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고성장과 3저호황의 결실은 그대로 집값으로 반영되었다. 우리 집 가격도 7년만에 세배가 넘게 올랐다.”

(박해천·박재현·김형재, 2015, 『확률가족: 아파트 키드의 가족이야기』, 마티, pp. 16-17)

Ⅱ. 한국 가족의 역사

3. 80년대 경제호황기 베이비붐세대(『82년생 김지영』 부모들)

3) 도구적 가족전략과 아들중심주의, 여아 낙태

“.. 그런데 우리 아저씨(남편)가 너무 힘들다. 애 키우는 데 얼마나 힘든 지 아냐? 그런데 듣기 싫은 거예요... (아이를 지우라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저 아들 낳은 거예요. 우리 아들 육사 나왔어요...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나니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래.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그리고 나서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 놓으니깐. 진짜 우리 아들 떴으면 어쨌겠어요... **아들은 완전히 그냥 우리 집 기둥이죠. 우리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은 그래도 대를 이어갈 사람인데..**”(김혜경.마경희, 2015 앞글)

II. 한국 가족의 역사

4. 20세기말 신자유시대의 가족: 2인부양 가족, 그 이상과 현실



Ⅱ. 한국 가족의 역사

4. 20세기말 신자유시대의 가족: 2인부양 가족, 그 이상과 현실

1) 가족만들기의 어려움: 출산의 부담

“어깨 위에 돌덩이 하나가 더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광고 같은데 보면 ‘임신을 했습니다’하고 눈물 흘리고. 왜 저럴까, 그러면서 제가 내가 굉장히 각박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 오버라는 거예요... 다들 얘기는 ‘아, 아이구’ 이런 생각뿐이 안 든다고 하니까. **정말 ‘아이쿠, 아이쿠’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요.... ‘나 임신했어요’ 하면.** 그때부터 애(친구)들한테 들려오는 것은 기저귀 값이 얼마이고 영어 학원을 보내는데 70만원이고, 한 달에 애한테 얼마가 들고, ‘**야, 너 잘 해야 된다’ 주변에서 ‘너 돈 잘 벌어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하는 얘기밖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김혜경 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49집2호)

Ⅲ. 후기근대적 개인, 가족의 의미를 묻다

1. 한 청년의 고백 <엄마가 아는 '나'는 이제 없습니다>

“... 한때 나를 제일 잘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와 맞지 않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된 건 슬픈 일입니다... 사실 가족들은 제 주변 사람들 중 저와 가장 맞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산 시간이 함께 한 시간보다 짧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가족과 아예 다른 곳에서, 또 아예 다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거나 쉽게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2017년 6월 4일)

Ⅲ. 후기근대적 개인, 가족의 의미를 묻다

2. 이게 가족인가?

: “독박가사”,

“독박육아”,

“대리효도”



Ⅲ. 후기근대적 개인, 가족의 의미를 묻다

3. 중년의 실험 : 황혼이혼과 졸혼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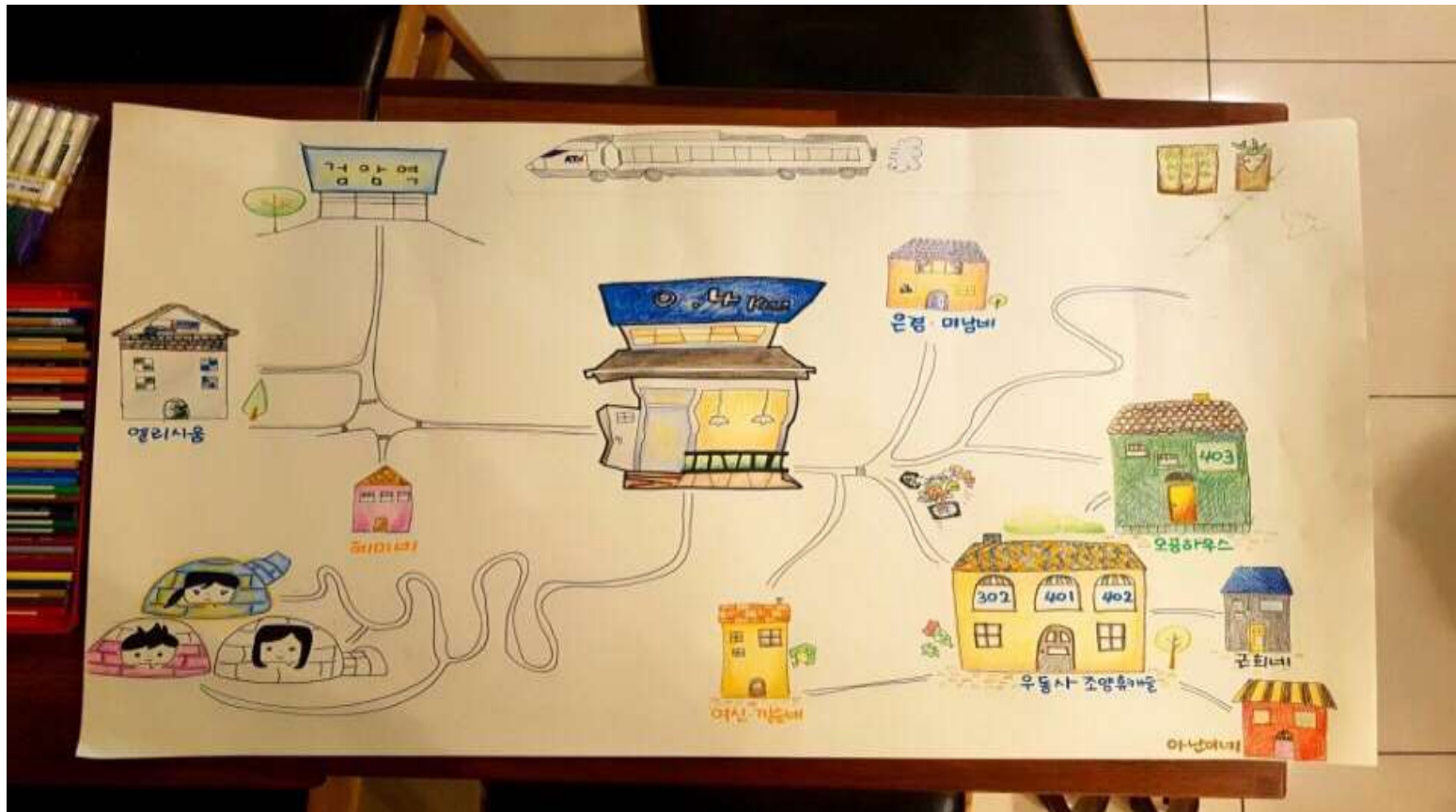
IV. 친밀성 공동체의 실험들 : 1인가구의 불안한 자유와 핵가족의 폐쇄성을 넘어

“서른이 왔다. 연애가 시작되었다가 끝났고, 상가건물 월세, 옥탑방, 1층방, 전셋집 등으로 몇 차례 이사를 했고, 원형탈모, 위장병, 요통... 등 심각하지 않은 다양한 질병이 내 몸을 스쳐갔다. 그러는 동안 의문이 생겼다. 나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것,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 실은 그것이 얼마나 사무치게 무섭고 쓸쓸한 일인지...” (언니네트워크 2009: 226)

IV. 친밀성 공동체의 실험들

대안적 주거공동체(탈전통의 결사체적 공동체) :

사례 1. 주거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2001)



IV. 친밀성 공동체 실험들

대안적 주거공동체(탈전통의 결사체적 공동체) :

사례 2. 1인가구 네트워크: 비혼들의 비행(2003)



IV. 친밀성 공동체 실험들

대안적 주거공동체(탈전통의 결사체적 공동체) :

사례 3. 부분적 주거공동체: 감이당(2011)



2014 학술제 특별 강의

길 위의 공부란 무엇인가

고미숙

V. 우리가 아는 가족은 없다 : 가족다양성론을 넘어서 가족 구성의 회로찾기

1) 표준적 생애시간표의 문제

- 성인기 개념의 해체
- “젠더-나이체제”의 극복

2) “젠더 없는 가족 없다”

: 성차별에 대한 성찰과 일상생활의 민주주의

-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
- 의사소통 민주주의와 권력의 평등성

V. 우리가 아는 가족은 없다 : 가족다양성론을 넘어서 가족 구성의 회로찾기

3) 혈연에 제한되지 않는 가족: 우정으로서의 가족

“가족이라 칭하기는 친구같고, 친구같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족같고, 또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동지적인...”

4) “가족가구체계” : 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적 토대 정립

- “가족가구체계(family-household system)” (Barrett & McIntosh, *The Anti-social Family*, 2015)
- 라이프스타일의 정치학/물질적 부양체제

맺음말: 우리가 아는 가족은 없다, 그러나 진행 중인 가족실험들

“맘충”과 “한남충”을 넘어서...n개의 가족 만들기

- 비혼과 1인가구
- 결혼과 이혼 및 재혼
- 동거와 별거
- 이혼 한부모 가족과 비혼(부)모 가족
- 출산가족과 무자녀가족
- 같이 혹은 따로 살기(LAT. Living apart together)
- 홈 셰어링과 공동체 가족
- 이성가족과 동성가족
- 갭이어(gap year)로서의 결혼안식년 제도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긴급위기임신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 1. 서론
- 2.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내용과 의의
 - (1) 헌재 2017헌바127결정의 주요내용
 - (2) 헌재 2017헌바127결정의 의의
- 3.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정비의 방향
 - (1) 임신중절을 둘러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해
 - (2) 여성의 임신중단 자기결정권을 보장의 법제화를 위한 쟁점들과 주요 입법례
 - (3) 실질적·전체적 관점에서 법제정비와 위기임신여성의 지원체계의 정립의 필요성
- 4. 결론: 임신중단 자기결정권을 보장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방향

1. 서론

▶ 낙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체계

▶ 원칙적 '낙태'금지(형법 제269조 이하)와 예외적 '낙태'정당화(모자보건법 제14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우생학적 또는 정신질환, 신체질환 사유, 부모의 전염병적 사유, 강간 등 범죄적 사유, 친족간 임신 등 윤리적 사유, 임신부 건강상 사유

▶ 헌법재판소 2019.4.11. 헌재 2017헌바127 결정: '자기낙태죄'와 의사에 의한 '촉탁낙태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불합치, 2010.12.31.까지 개정촉구.

▶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실시 한 한계 내에서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갖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 중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함.

▶ 여성의 재생산권보장의 관점에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들과 종합적 법제정비와 더불어 여성의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임신위기지원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검토하고자 함

▶ 낙태와 임신중절이 구분이 되는 개념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양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현행 법률상 낙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낙태라고 표현하고 그 외의 경우는 임신중절로 표현

2.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내용과 의의

- ▶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 낙태죄 합헌
 - 태아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며,
 -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시
 - 따라서 낙태죄처벌로 인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이 합헌

헌재 2019.4.11. 2017헌바127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소원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

- ▶ 헌법불합치의견
- ▶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인정하며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침해
 -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인적(全人的) 결정.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
 -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봄. 즉,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임.
 - 낙태갈등에서 형벌: 생명보호에 실효적 못함. 의료후유증 등에서 법적 구제가 어려움. 민·형 사상 악용.
 - 모자보건법상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고 있음.

형법상 자기낙태죄조항:

- ▶ 모자보건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 ▶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음.
- ▶ 따라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

2017헌바127 결정의 의의

- ▶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음.
 - 태아의 생명권과 이를 위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생명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고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 임신부의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은 곧 태아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임을 인정할 필요
 -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또는 종결에 대한 결정을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으로 파악
- ▶ 입법자는 현재의 판시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지며,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함
 - 낙태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 임신부의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3.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정비의 방향

(1) 임신중절을 둘러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해

1) 여성의 자기결정권

- ▶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제10조에서 도출. 피임권, 임신할 권리, 임신중단권.
- 형법상 낙태죄:
 -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력(威嚇力)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음.
-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

2) 여성의 재생산권

▶ 1994년 카이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재생산권은 부부 및 개인이 자녀의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또한 이 권리는 관련 인권협약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차별, 강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재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함한다.”

▶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6조e에서는 ‘아이의 수 및 출산의 간격을 자유롭게 또 책임을 가지고 결정할 남녀의 동일한 권리’라고 규정.

▶ 재생산권의 다섯 개의 범주

- ① 생명과 생존, 안전의 권리
- ② 재생산에서의 자기결정권
- ③ 건강 및 과학적 진보의 혜택과 관련한 권리
- ④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존중을 받을 권리
- ⑤ 정보와 교육, 의사결정에 관련된 권리



▶ 재생산권은

-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여성이 성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성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치 않은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출산의 규모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는 한편,
- 사회적 권리의 성격으로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한 권리로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2)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의 법제화를 위한 쟁점들과 주요 입법례

- ▶ 임신중절은 한 나라의 가치와 이념, 문화, 보조생식술 관련의 바이오의약·바이오의료의 발달과 바이오시장 등 여러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임신, 출산, 임신중절에 관한 법·정책이 상이.
- ▶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위해 다음 사항의 법제정비 필요
 - 임신중절 관련한 법체계 및 임신중절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정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문제
 - 임신부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이 규정되는 경우, 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 자율적으로 임신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담체계 구성문제
 - 모자보건법상 정당화사유의 개정 필요성: 사회·경제적 정당화사유의 삽입과 우생학적 정당화사유 배제
 - 여성의 자기결정에 따른 임신중단의 경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 및 임신중절을 특정한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의 문제

1) 독일

- ▶ 연방헌법재판소의 제2차 임신중절결정(BVerfGE 88, 203)
- ▶ 1995년 형법개정. 1996년부터 연방통계청에서 임신중절통계를 발표
- ▶ 임신중절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형법에서 규정. 범죄, 비범죄, 정당화, 불처벌.
- 제218조에서 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 제218a 제1항: 상담후 3일의 숙려기간이 지난 여성의 요청에 따른 12주 이내의 임신중절. 범죄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임신중절의 약 97%가 이 경우에 해당
 - 제218a 제2.3항에서는 임신중절의 정당화사유를 규정.
 - 제218a 제2항: 의학적 정당화사유. 산모의 생명, 신체, 정신적 건강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기한제한이 없음.
 - 제218a 제3항: 범죄적 정당화 사유. 강간이나 이와 유사한 범죄. 최초 12주 내에 허용
 - 제218a 제4항: 상담 후 임신 12-22주 사이의 임신중절. 의학적 사유 불요. 임신중절한 산모는 불처벌. 수술한 의사의 경우 임신부가 궁박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면 처벌을 면함.
 - 제219조. 궁박과 갈등상황에 있는 임산부를 위한 상담. 임신갈등법. 공인된 임신갈등상담소.

▶ 임신갈등법

● 임신갈등상담소 : 연령별, 그룹별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실무적으로 매우 개별화된 맞춤형 정보제공과 상담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

- 산모의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베이비박스(태아의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 침해)
- 신뢰출산제도(제한적 익명출산제)를 도입.
- 16년 동안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 그 후 아동은 자신의 서류에 대한 열람권 행사. 산모가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결정.

● 임신중절 관련 비용

- 임신전후의 상담과 처치, 관련 비용은 모두 보험에서 지급
- 형법 제218a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정당화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은 보험에서 지급
- 상담을 거친 후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단의 경우: 수술 전 의사의 상담, 수술 후 의료적 처치 등은 보험에서 지급되나 중절수술비용은 원칙적으로 자기부담

* 예외: 임신부의 월 수입이 1,179유로 미만인 경우 국가부담. 양육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279유로가 더해져 상한액이 결정되며, 임대료가 345유로 이상인 경우 최대 345유로 내에서 상한액이 더하여 계산

2) 프랑스·네덜란드

▶ 프랑스

- 1975년 5년의 한시적 법령인 Loi Veil을 통해서 기간방식을 도입
- 2001년 대폭 개정. 형법에는 임신부의 동의 없는 임신중절의 구성요건규정만 두고, 임신중절과 관련된 다른 사항은 건강법에서 규정. 임신 14주내에 '위기'에 처한 여성은 의사에게 임신중절을 요구
- 2014년 남녀평등법에서 임신중절을 위한 여성의 '위기상황조건'을 삭제.
- 임신을 유지 하고 싶지 않은 모든 여성의 권리. 최종생리 14주 이내에 의사와의 상담을 한 후 7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임신중절. 사회보험에서 비용인수.
- ca. 220 000 명의 여성이 매해 임신중절

▶ 네덜란드

- 형법상 낙태금지규정은 그대로 두고 임신중단법((1984년)을 제정
- 여성이 궁박에 처해서 임신중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생존능력이 없는 시기인 임신 24주까지 임신중단을 보장.
- 의사의 상담. 임신중절병원이나 임신중절의 허가를 받은 병원에서만 가능
- 네덜란드 거주자 인공임신중절 비용 은국가건강보험시스템과 개인보험 적용 등을 통해 무료

3) 미국

- ▶ 1973년 Roe v. Wade 사건(410 U.S. 113 (1973)): 연방대법원이 임신부의 임신중절을 할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에 포섭된다고 봄.
- ▶ 기한방식: 임신 초기 3개월에는 임신부가 임신중절을 할 권리를 온전히 가짐.
 - 임신 중기 3개월 동안은 국가와 여성이 임신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단계. 임신부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신중절 규제가능.
 - 임신 후기 3개월에는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시기로서 국가는 임신부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태아의 생명 또한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짐. 임신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없는 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신중절을 금지할 수 있음.
- ▶ 기한방식의 변화: 기한방식의 큰 틀은 유지, 그러나 엄격한 기한방식은 폐기한 것으로 보임.
 - 1992년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사건:
태아의 독립적인 생존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태아의 독립적인 생존능력이 없는 시점에도 임신부에게 임신 중단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주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임신중단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본 것

4) 오스트리아

- ▶ 1975년부터 형법 제96, 97, 98조에서 임신중절에 관한 규정
- ▶ 제96조 임신중절 처벌
- ▶ 제97조 제1항 Z 1에서는 기한방식에 따라 임신 3개월 이내의 임신중절이 가능
- ▶ 제1항 Z 2와 3에서는 임신 3개월 이후 의학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의 불처벌
- ▶ 정당화 사유: 의학적, 우생학적 사유, 14세 미만 임신.
-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1974.1.23. 기한방식의 임신중절규정인 연방형법 제97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

(3) 실질적 · 전체적 관점에서 법제정비와 위기임신여성의 지원 체계의 정립의 필요성

1) 유기적 관점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제·개정 필요성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실질적 의미의 생명보호

① 형법의 개정

- '낙태죄'규정의 명칭변경 필요.

- 형법에서 모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임신부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임신중절 정당화사유, 임신부 동의와 의사에 의한 임신중절, 상담과 숙려기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영아살해죄와 영아기아죄 규정의 폐지

- 형법 제251조는 ①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②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③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 형법 제272조에서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산을 강요한 후 치욕은폐 등을 위한 유기나 살해를 감경하는 것도 매우 큰 모순

- 독일의 경우: 1998년 구 형법 제217조 영아살해죄 삭제

② 모자보건법의 개정

➤ 모자보건법은 제정배경,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한계가 큼.

- 1949년 만들어진 일본 우생보호법 제14조를 모태. 비상입법기구인 비상국무회의에서 비공개적으로 입법. '부국강병'을 앞세운 국가주의 논리.

➤ 현행 모자보건법의 내용의 큰 문제점

- 여성을 국가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 여전히 존재.

➤ 제14조 임신중절 정당화사유의 문제점:

➤ 임신, 출산과 관련된 내용은 형법으로 이동.

2) 위기임신여성의 지원체계의 정립의 필요성

① 임신·출산 또는 임신중절·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위기와 상담시스템의 구축필요성

- ‘임신출산위기’는 여성의 체내에서 발육하고 있는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기까지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 위험한 고비에 처하는 것.
- ‘임신출산위기 여성’은 좁은 의미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갈등에 놓여 있는 여성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
- 임신출산위기는 원치 않거나 혹은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출산에 대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임신중절과 출산, 직접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임신갈등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임신갈등의 개념은 독일 형법 제219조와 1992년에 제정되어 2013년에 최종 개정되어 시행 중인 독일의 임신갈등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임신갈등이라는 용어 생소. 헌법재판소는 2019년 판결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와 결부하여 ‘낙태갈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를 지지하고 돕기 위하여 법과 제도, 그리고 위기 지원에 대한 지식과 기술, 관련 조직 혹은 기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② 독일의 임신갈등법상 임신갈등상담소의 사례

임신갈등법(임신갈등의 회피와 극복을 위한 법)

- ▶ 모든 사람에게 건강, 성에 대한 설명, 피임, 가족계획, 임신갈등상담
- ▶ 제6편 신뢰출산제도
 - 7개의 관련법령이 함께 개정
 - 친모의 익명성은 1회 임신상담소에서 상담자에게 밝힘
 - 친모의 근원증명서류는 밀봉되어 '가족과 시민사회 업무를 위한 연방청'에 이송되어 보관
 - 이후에서의 모든 절차는 친모의 가칭으로 문서화됨으로써 친모의 익명성이 보장
 - 익명출산아동의 경우 만 16세에 달한 아동은 자신의 친모에 대해 알 권리를 행사
 - 상담소는 친모에게 아동이 만 15세가 된 후부터 그녀의 가칭으로 열람권에 대항하는 본인의 이익들을 설명할 수 있음.
 -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도 임신갈등상담소가 지원

4. 결론에 같음하여: 임신중단 자기결정권을 보장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방향

- ▶ (1)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종합적 정비
- ▶ 형법상 '낙태죄' 규정과 더불어 영아유기죄와 영아실해죄의 폐지도 함께 검토
- ▶ 모자보건법의 전면개정
 - 독일의 임신갈등법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여 형법상 임신중절 규정과 연동되는 상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신뢰출산제도(제한적 익명출산제도) 도입필요

(2) 임신중절관련 법제정비의 구체적 정비방향

1) 낙태 관련한 법체계 정비 및 임신중절 불처벌의 방향

▶ 첫째,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의 이원화를 유지하는 방안

▶ 그러나 이 방안은 임신중절을 여성의 인권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궁박한 사유에 따른 최후수단으로서 낙태'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음.

▶ 둘째, 독일의 입법례에 따른 법제정비 방안(제안)

- 임신중절을 범죄, 비범죄, 임신중절 정당화, 불처벌의 4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형법에서 모두 규정.

-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중절 정당화 사유는 형법 제269조로 이전

- 모자보건법은 태아, 아동, 여성의 건강, 재생산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적 법률로서 전면적 정비

▶ 셋째, 프랑스 또는 네덜란드 입법례에 따른 방안

- 프랑스 형법에서는 임신부의 동의 없는 임신중절처벌규정. 다른 임신중절관련 규정은 건강법

- 네덜란드는 형법상 임신중절금지규정은 그대로 두고 임신중단법(1984년 제정)을 제정하여 임신 24주까지 임신중단을 보장

▶ 이러한 법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좀 더 강화하여 보장하는 방안으로 평가 될 수 있지만 사회구조, 사회보장의 정도, 시민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직은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2)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임신중절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방안

첫째, 기한방식에 따른 자기결정권보장

- ▶ 미국과 오스트리아. 미국의 경우 엄격한 기한방식이 폐기되고 최초 3개월 내에서도 임신중절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협소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둘째, 프랑스처럼 어떠한 요건 없이 임신 12주(최종 생리 14주)까지 자유.

- 네덜란드는 궁박의 사유로 임신 22주까지 임신중절 보장

- ▶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충실, 그러나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관점에서 볼 때, 법제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셋째, 독일방식에 따라 임신중절사유에 따라 좀 더 자세하게 임신중절시기를 정하는 방법

- 임신 12주 상담 후 자유. 비범죄

- 의학적 사유: 기한 제한 없음. 임신중절 정당화사유

- 범죄적 사유: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절 정당화사유

- 궁박사유: 의학적 사유 필요 없이 '궁박'의 경우 12-22주내 임신중절의 불처벌.

- ▶ 합리적이며 고려할 수 있는 입법례라고 생각함

3) 자기결정권의 실질화를 위한 상담제공의 방법에 관한 방안

- ▶ 자기결정권은 임산부가 어떠한 외부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보의 접근이 쉬워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나라에서 임신중절전 상담은 필수적 임
- ▶ 두가지 유형이 존재
- ▶ 첫째,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임신중절을 실시하지 않는 의사가 임신중절방법, 후유증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
- ▶ 둘째, 독일. 형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임신갈등법에 따라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체계적 · 조직적 · 전문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상담 진행.
- 임신, 임신갈등, 가족계획 등과 관련된 설명 및 상담
- 임신갈등여성을 위한 상담의 중요성.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의 도입필요성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임신중절 정당화사유에 대한 방안

임신 12주 이후의 임신중절을 위한 정당화사유 문제

▶ 우생학적 사유: 삭제 필요.

- 장애 있는 태아와 비장애의 태아를 구별하는 문제. 유엔 장애인차별철폐협약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이 되는 것.
- 모의 건강상 정당화사유로 모의 생명, 신체, 정신적 사유로 기간제한 없는 임신중절 또는 ‘궁박’ 사유로 12-22주까지의 임신중절

▶ 사회·경제적 사유를 정당화 사유로 추가할 지의 문제

- 현재 임신중절의 가장 큰 사유: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고용 불안정, 소득 등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낙태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문

▶ 국가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을 고려하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차별철폐, 다양한 가족수용문화의 수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사회보장의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임신·출산 후 인간다운 생활 보장 등의 의무가 있음. 이러한 여건의 조성 없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국가원칙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임신중단을 정당화함으로써 그 의무를 회피해 버리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

- 사회·경제적 정당화사유를 추가하는 대신 임신 12주부터 22주(최종생리후 24주)내에서 의학적 정당화 사유 없이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임신중단에 대하여 불처벌 하면 될 것.

▶ 따라서 사회·경제적 정당화사유를 신설하는 것에는 신중필요.